

각종 서식 작성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

I. 공적조서(붙임4)

※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작성한 공적조서에 대해서는 포상 추진 일정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바, 아래 사항 숙지 후 작성 바람.

1. 성명

-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작성

(예) 하이디 마멜, 나카무라 킴, 동경와이엠씨에이(단체의 경우)

- 한국 국적자는 한자성명 필수 표기

- 외국 국적자는 영문성명 필수 표기

※ 영문성명의 경우 반드시 한글표기 병기, 한자성명 없는 경우 영문성명 기재, 한자/영문 표기 재차 확인 필요

- 故人の 경우 성명 앞에 '故' 표기(추서)

- 성명, 소속, 직위 등은 포상증서 및 포상대장에 영구히 기록되므로 공식 명칭을 한글로 정확히 명기(포상실시 후 변경 불가)

2. 주민등록번호/생년월일 및 성별

-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입

-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후보자는 앞 번호는 생년월일, 뒷 번호는 성별을 이용하여 13자리 기입

(예) 주민번호가 없는 1961년 1월 1일 생 남자의 경우, 610101-1000000으로 기입

※ 재일동포의 경우, 재외국민등록번호 또는 민단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

3. 국적/주소

- 국적 필수 기재

- 등록기준지는 번지수까지 상세 기재(신원조회 양식도 동일)

- 현주소는 외국의 현 거주지 간단 기재(신원조회와 무관)

4. 직업, 소속 및 직위 : 한글로 소리나는 대로 한 개만 작성

○ 직업 : (예) 건축업, 교사, 사업가, 기타

○ 소속 : (예) 쓰리엠사, 지엠컴퓨터, 코리안교회, 단체명(단체의 경우)

○ 직위 : (예) 前 회장, 사원, 목사, 교사, 前 고문

※ 후보자가 현재 소속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, ‘前’ 글자를 직위 앞에 사용 가능

※ 후보자가 **소속 단체 내에서 다른 직위를 맡고 있을 경우**, ‘前’ 사용이 불가하며, **반드시 현재 직위로 표기**

(예) 하나한인회 前 회장 홍길동 : 홍길동씨가 현재 하나한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

(예) 하나한인회 고문 홍길동 : 홍길동씨가 회장을 맡다가 현재 고문으로 직위가 바뀌었을 경우

※ 공적조서상의 소속 및 직위가 포상증서(표창장)에 표기되어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공관에서 추천한 목적에 적합한 소속(동포단체명 등) 및 적합한 직위 기재

-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주평통 위원과 같이 다른 종류의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속 및 직위의 기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

5. 공적기간 : 포상대상자가 동포사회에 직접적 기여를 시작한 연도로부터 산출된 공적기간을 4자리 숫자로 명기 (예) 8년 3개월 : 0803

○ 훈장 15년 이상, 포상 10년 이상, 표창 5년 이상

※ 포상 심사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됨을 감안, 정확·적실한 작성 필요

※ 공적기간은 해당 훈격 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할 최소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, 공적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훈장·포상·표창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지 훈장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

6. 공적요지 : 100자 이내(띄어쓰기 및 구두점 포함)의 개조식 작성

○ 핵심만 계량화·수치화하여 요지 작성

(예) 홍길동은 17년간 ○○한인회에서 문화행사 개최 및 매주 현지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동포 단합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

- 향후 「수여증명서」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주된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·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

7. 추천훈격 : (예) 국민훈장 동백장, 국민포장, 국무총리표창

- **참고의견**은 [붙임6] 포상후보자명단(엑셀양식)의 **비고**란에 기재
(예) **추천훈격 이외에는 불가**(○○훈격 이하는 수상 거부) 또는 추천훈격이 안 된다면 **○○훈격까지는 수상 희망** 등

※ 단체의 경우 표창만 가능 :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재외동포청장표창

※ 상훈법 및 상훈법시행령 준수

- **재포상 금지 기간 준수** :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 7년, 포장 5년, 표창 3년 (단체 2년)

- **동일한 공적**에 대하여는 **거듭 훈장을 수여하지 않음**.

-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훈장과 **동일 종류의 동일 등급** 또는 그 **하위 등급의 훈장**, 또는 훈장과 **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하고**, 이미 받은 포장과 **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수여하지 못함**.

(예) -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이 지났더라도 목련장·석류장·국민포장 수여 금지

- 국민포장 수상자는 재포상 금지기간이 지났더라도 국민포장 재수여 금지

8. 추천순위 : 추천후보자가 복수일 경우, 전체후보자 중 해당후보자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기재할 것(미기재시, 엑셀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순위 부여 예정)

※ 단, 추천 우선순위와 훈격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 그 사유를 [붙임6] 포상 후보자 명단의 비고란에 명시할 것

9. 조사자 및 추천관

- 조사자 : 재외공관 또는 기관의 포상 담당자
 - 소속 : (예) 해당 공관명
 - 직위 : (예) 2등서기관, 영사, 부영사, 참사관 등
 - ※ 한인단체장 또는 민단 간부를 공적조서상 조사자로 기재 불가
- 추천관 : 공관장 또는 기관장
 - ※ 관인 불요 (공관장 또는 기관장 결재 전문을 추천관인으로 인정)

10. 주요학력 및 경력

- 시작 및 종료 연월일을 가능한 기재(연도 기재는 필수)

11. 과거 훈포상 경력

- 장관표창 이상 기재 (기타 표창 혹은 oo상은 기재 불요)
 - ※ 후보자 본인에게 과거 포상경력을 반드시 확인
 - ※ 기포상자 재추천시 후보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심사로 불리
 - ※ 심의·선정된 인사에 대한 관계부처 조회 후 탈락하는 사례 방지 (동 탈락의 경우 다른 인사로의 대체 추천 불가)

12. 공적사항 : 띄어쓰기 포함 반드시 최소 2,000자* 이상 작성

- ※ 글자수는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파일-문서정보-문서통계에서 확인 가능

13. (외국국적자* 추천시) 영문공적조서 작성 유의사항

- * 외국국적자 추천은 우리 재외동포에 한함
- 국문 공적조서 양식에 작성
- 정부포상업무지침(행정안전부)상 요구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문 공적조서와 동일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
 - ※ 반드시 번역문이 동일할 필요는 없고, 공적을 요약하여 간단히 기재 가능(최소 분량 없음)

II. 기타 제출서류

1. 신원조회 양식(붙임5)

- 필요정보 : 한글 성명, 주민등록번호(오타 주의) 또는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 또는 현 거주지, 국적
- 주민등록번호가 없을시 :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
 - ※ 국적상실자의 경우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라도 신원조회에는 도움이 되므로 신원조회 양식에는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
- 등록기준지는 번지수(또는 건물번호)까지 기재
 - ※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명확한 경우, 후보자가 등록기준지를 번지수까지 기억하지 못하여 기재불가해도 무방하나 가능한 기재

2. 포상 후보자 명단(붙임6)

- 필요정보 : 추천순위, 추천공관, 소속 및 직위, 성명, 생년, 성별, 공적기간, 과거포상기록, 공적개요, 추천 훈격 및 조정가능 훈격
 - ※ 조정 가능 훈격은 반드시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하여 작성, 조정 가능 훈격 미기재 시 훈격 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, 심사 결과 추천된 훈격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차상위 훈격으로 조정되는 것이 아닌 포상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치 예정
 - ※ 추천 순위 미기재시, 엑셀 명단에 기재된 순서대로 추천순위 간주 예정

3.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(붙임7)

- 추천기관의 포상지침 및 심사 과정·절차에 대한 동의
- 개인정보 제공 동의 :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 개인정보 항목,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등 확인
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은 △범죄경력 조회 △세금체납여부 확인(국세, 지방세, 관세) △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등
 - ※ 세금 체납(특히 지방세)으로 심사 제외된 사례가 빈번한바, 후보자 개인에게 국내 세금 체납 내역이 없는지 추천 전 반드시 확인 요망
 - ※ 공개검증 시 성명, 소속, 직위, 주요 공적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공개

- 기타 정보(성별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)는 미공개

Ⅲ. 기타 참고사항

1. **외국인 추천** 가능 여부 : 가능 (단, 우리 재외동포 중 외국국적자에 한함)
※ 외국국적자는 영문 이름 표기가 필수이며, 국문 및 영문 공적조서·영문 이력서 제출
2. **단체 추천** 가능 여부 : 가능(단, 표창에 한함)
 - 대통령, 국무총리, 재외동포청장 표창 가능
 - 공적기간은 개인포상과 동일 : 5년 이상(재외동포청장표창은 3년 이상)
 - 재포상 금지 기간 : 동일 공적에 대해서 표창 수상 후 2년 이내 금지
3. 무궁화장(최고 훈장) 추천 관련
 - 매우 제한적 추천(1명) 가능
 - 공적의 영향력 및 범위, 연령, 공적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고 수준에 해당
 - 행안부와 추천 이전에 별도 양식을 통한 협의 필요
4. 행안부의 계획포상제 관련
 - 의의 : 계획되지 않은 포상 및 예년 규모 이상의 포상 지양
 -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포상 여부 자체를 반영/미반영으로 연초에 통보
 - 행안부의 포상규모 협의 결과 통보 후, 재외동포청은 그에 따른 최종추천 가능
5. 행안부 상훈포털시스템 관련
 - 추천 후보자의 공적사항을 비롯한 정보 입력(동포청 일괄 조치)
 - 추후 부적격자를 시스템상 자동으로 분별
 - ※ 재포상 금지 및 하위·동등 훈격 추천 금지 원칙 준수 이유

6. 심사 절차

○ 재외동포청 자체 검토·심사

※ 신원조회(경찰청 의뢰)·세금체납 조회 등 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

※ 행안부와외의 포상규모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심사 진행

○ 공적심사위원회 심의·의결

- 위원 : 재외동포청 실장급 이상 간부 및 민간위원

- 간사 : 국장급 간부

※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7. 심사 기준

○ 부적격자 우선제외 : 추천 제한사유(범죄경력, 세금체납 등) 확인 결과 반영

○ 공적 내용, 공관추천 우선순위, 공적기간, 재외동포 수 등

※ 기타 고려 사항 : 지역·국가별 형평성 및 선례

8. 포상 추진일정(안)

○ 5월 : 추천 접수 마감

○ 6월 : 추천 제한사유 확인, 내부심사

○ 7월 : 행안부와외 포상 규모 협의, 공개검증(재외동포청 및 상훈 홈페이지 15일 이상 게재)

○ 8월 : 공적심사위원회 의결, 행안부에 최종 후보자 추천

○ 9월 : 차관회의·국무회의·대통령 재가 진행, 행안부 최종 결정 통보 접수

○ 10.5.(예정) :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계기 포상 전수

○ 10월 : 홈페이지 최종명단 공개, 관보 게재, 포상품 발송 등. 끝.